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
----------	-----

제출년월일 : 2005. 11. 18.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안 제13조)
 -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 민원편의를 위하여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가일수의 조정(안 제18조)
 -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함 (안 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2005.9. 6 ~ 9.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마. 기타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사본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 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군수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28조를 제30조로, 제27조를 제29조로,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토요일 전일 근무제) ①주민편

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 신설

제16조의2 (삭제)

제18조(연가일수) ①-----
-----.

근속기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p>제23조(특별휴가)① ~ ②(생략)</p> <p>③여자공무원은 때 생리시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단서신설></p> <p>④ ~ ⑤(생략)</p> <p>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p>⑦군수는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제23조(특별휴가)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④ ~ ⑤(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	---

⑧ 월15일 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생략)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신설>

<삭제>

<삭제>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6조(영리업무의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신 설>

제27조(겸직허가)(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8조<신 설>

제28조(공무원의 범위)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제29조<신 설>

제29조<현행 제27조와 같음>

제30조<신 설>

제30조<현행 제28조와 같음>

부 칙

제1조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
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
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
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
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
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보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 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1
탈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 모 ·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 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